

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15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3. 3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정이유

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·면에 위촉하는 복지위원에 대하여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에는 3명 그 밖의 면에는 2명으로 함(안 제2조)
- 나. 복지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를 읍·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함(안 제3조)
- 다.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라. 복지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복지위원에게 증표를 교부하도록 함(안 제10조)
- 바. 위원 중에서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
 - 고성군 공고 제2009-35호(2009. 01 .06 ~ 2009. 01 . 28)
 - 의견제출사항 : 없음
- 나. 관련법령 및 근거
 -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
- 다. 예산조치 : 6,090천원(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)
- 라. 규제심사 : 규제신설, 폐지 등 없음

4. 본 문

-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성군 복지위원의 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의 정수) 위원회의 정수는 읍은 3명으로 하고 그 밖의 면은 2명으로 한다.

제3조(위촉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·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직무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
1. 지역사회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한부모가족·요보호자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(이하 "사회복지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한 선도 및 상담
2.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, 사회복지시설, 그 밖에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
4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
5.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

제6조(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사망,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
4.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
제7조(회의) 군수는 위원에게 복지시책을 알려 협력을 구하고,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·제안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) 군수는 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

제9조(연계·협력) 군수는 위원 중에서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0조(증표교부) 군수는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, 그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「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고성군 복지위원증 (제10조 관련)

(앞면)

경남 고성군 복지위원증	
사진 (4.9cm × 4cm)	
철인	
복지위원증 번호	
성 명	
경남 고성군	

(뒷면)

성 명	
주민등록 번호	
주 소	
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임을 증명합니다. (유효기간: . . .) 경남 고성군수 (인)	
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 기 바랍니다.	